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24 강간, 유사강간,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송현석(기소), 조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전지원
판 결 선 고 2026.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4. 3. 20.경 피해자와 C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같은 날 01:53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거절하고, 잠긴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4. 3. 20. 13:00경 대구 중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4. 3. 20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쪽 어깨로 피해자의 한쪽 팔 부위를 누르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물 결과회신에 대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주소지 □□빌라 CCTV 수사)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둢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



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를 강간한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3. 21. 01: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클럽 2층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해자를 수회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11. 6.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양형) 첨부 참고자료 1 합 의서(폭행)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철 _____

 판사 김수철 _____

 판사 이보경 _____